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04~61
----------	---------

제출일자	2004. 12.
제 출 자	거창군수

■ 제정 이유

-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관리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장기예치금액 : 적립액의 30%
 - 당해연도사용기금액 : 적립액의 70% 및 이자액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6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안 제10조 및 제12조)
 -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 위원회 개최는 연2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안 제13조)
 -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등을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

■ 제정근거

- 조례 표준(안) 시달 : 도 치수재난관리과-10432(2004.9.20)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영 제75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운용·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